

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 (대표자)	법인·단체 또는 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
	주소	
신청내용	교육명칭	
	교육목적	
	교육운영 장소	
	홈페이지	
	개설예정일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6조의2제3항,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시설,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1부 2. 교육과정편성표(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) 및 운영계획서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 서 같습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신청인이 공무원의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 및 확인	→	검토·심의	→	결재	→	지정서 작성	→	교부
신청인	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